

춘천지방법원 2022. 11. 10 선고 2021나30089(본소), 2021나30096(반소) 판결
[대여금 · 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

담당변호사 최유덕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별님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

담당변호사 박영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송

담당변호사 강두리, 김선일

변 론 종 결 2022. 10. 13.

판 결 선 고 2022. 11. 10.

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. 12. 15. 선고 2019가단57307(본소),
2020가단54304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[본소]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에게 2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9. 9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반소] 원고는 피고에게 원주시 C 전 248㎡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3. 10. 10. 접수 제545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추가하는 내용

처분문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(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8다카22169 판결 등 참조),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의 증명력을 부인하기 어렵다.

그리고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가 도박 채무라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(반소원고)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장두봉, 판사 신흥호, 판사 여현주